

전주지방법원 2021. 12. 8 선고 2020가단251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
담당변호사 우승원

피 고 A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준
변 론 종 결 2021. 11. 10.
판 결 선 고 2021. 12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7. 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9. 7. 11. 접수 제174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주식회사 C은 2017. 11. 7.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에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, B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주식회사 C이 D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2020. 3. 4.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, 원고는 2020. 4. 7. D은행에게 181,186,770원을 대위변제한 후 위 회사와 B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. 5. 22.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0. 7. 25. 확정되었다.

다. B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7. 5. 피고와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2019. 7. 11.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, B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각 토지는 유한회사 E이 B 명의로 매수한 토지로서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B 명의의 등기는 무효여서 B의 책임재산이 속하지 않고,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,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,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,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(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,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유한회사 E(이하 ‘E’이라 한다)에서 화부로 근무하던 F의 소유였는데, 유한회사 E은 F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07. 1. 19. 당시 대표였던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F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, E은 위와 같이 매수한 후 G단체 등 여러 곳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, 피고는 2019. 5. 23. B 등과 E의 지분 100%를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고 매도인인 F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고, 이 사건 각 토지는 B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B이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의 다른 요건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곽경평

부 동 산 목 록

1. 전라북도 김제시 H 임야 2,479㎡
2. 전라북도 김제시 I 전 3,217㎡. 끝.

